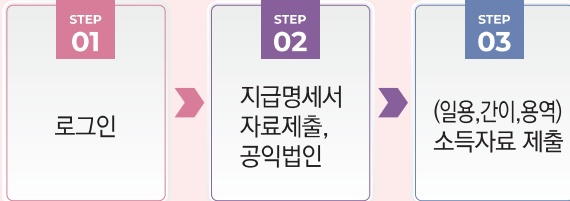


소득자료 제출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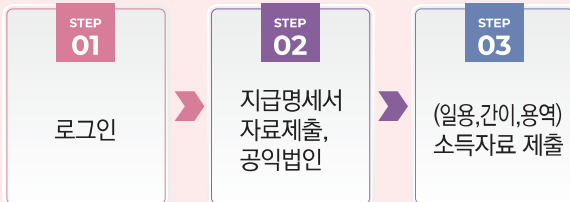
홈택스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이용한 제출



손택스

스마트폰에서 '손택스 앱'을 이용한 제출



서면제출

(서식 작성)

우편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



제출방법 따라하기



용역제공자 소득자료 매월제출

'24년 1월부터

스포츠강사 트레이너 추가

한달에 한 번 국세청홈택스로
쉽고 편하게 제출하세요



제출기한 소득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

제출의무자 스포츠강사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알선·중개한 사업자



'24년부터

소득자료 매월 제출대상 추가



- '21.11월부터 캐디, 대리운전, 퀵서비스 등 8개의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매월 수집하여 복지행정에 활용
- '24.1월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도 추가되는 것으로 법령 (소득칙 제99조의 3)이 개정되어 매월 제출 대상으로 확대

업종 추가

종전

캐디
대리기사
퀵서비스
간병인
가사도우미
수하물운반원
중고자동차판매원
육실종사원

변경

(신설)
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
캐디
대리기사
퀵서비스
간병인
가사도우미
수하물운반원
중고자동차판매원
육실종사원

소득자료 제출의무자



-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자
* (의무제외) 사업자가 용역제공대가를 받아 원천징수한 경우

예시

골프연습장(골프강사), 헬스장(헬스트레이너),
요가사업장(요가강사), 골프장(캐디), 탁구장
(탁구강사), 테니스장(테니스강사)

소득자료 제출기한



(예시) '24.1월 소득발생 → '24.2월 말일까지

소득자료	제출기한
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	용역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

소득자료 성실 제출시 세액공제 혜택



적용요건

제출기한 이내에 홈택스(손택스)를 통해
용역제공자 인적사항, 용역제공기간, 용역제공대가 등
기재할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적용

적용기간

2021.11.11.~2026.12.31. 기간 중
수입금액(소득금액) 발생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분

공제금액

용역제공자 인원수 × 300원
-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(최소 1만원)

공제방법

과세자료 제출 의무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
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)에서 공제

스포츠강사와의 대화

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명세서



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는 왜 추가되었나요?

스포츠강사의 소득을 파악하여
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함입니다.

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는 누구를 의미하나요?

골프강사, 헬스트레이너, 필라테스(요가)강사,
수영강사 등 스포츠강습용역을 제공하는 자를
의미합니다.



사업자가 스포츠강사 소득을 모르는 경우에는
어떻게 하나요?

사업자는 소득금액을 0원 기재하고,
나머지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